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양정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0671

발의연월일: 2023. 3. 15.

발 의 자 : 양정숙 • 윤준병 • 황운하

김승원 • 박용진 • 윤미향

서영교 • 이용빈 • 김정호

이용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,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음.

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에 의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고지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므로, 임차권등기명령의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음. 이 경우 다른 곳으 로 거주지를 이전하려는 임차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함.

이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도 이를 집행할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용하게 함으로써,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조의3).

법률 제 호
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제291조 및 제293조"를 "제2 91조,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제3조의3(임차권등기명령) ①・②	제3조의3(임차권등기명령) ①・②	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	
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	③			
하여는 「민사집행법」 제280				
조제1항, 제281조, 제283조, 제2				
85조, 제286조, 제288조제1항·				
제2항 본문, 제289조, 제290조				
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				
부분, <u>제291조 및 제293조</u> 를 준	<u>제291조, 제292조제3항 및</u>			
용한다. 이 경우 "가압류"는	제293조			
"임차권등기"로, "채권자"는				
"임차인"으로, "채무자"는 "임				
대인"으로 본다.			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			
④ ~ ⑨ (생 략)	④ ~ ⑨ (현행과 같음)			